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참조7)

2019. 11. 4.(월)10:00

본 회 의 장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성 남 시 의 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 존경하는 의장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마선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0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관계 법령 및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번째, 이기인, 박은미, 한선미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조성된지 30년이 도래한 분당은 최근 도시기반 시설들의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으나.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채 정부와 국토부는 정해진 주택공급량만 달성시키기 위해 서현동 110번지 일대 공공주택건설을 강행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국토부의 탁상행정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두 번째, 정 윤, 김명수 의원 등 열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지원 대상사업 신청조건이 리모델링 허가기준보다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리모델링 허가 조건중 동별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신청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고, 자문단 회의 소집은 시장의 역할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단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지원금액 및 지급 절차 등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특별교통수단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 정비코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번째, 이상호 의원 등 서른한 분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서 주차장의 협소로 대형버스 등 일부 관용 차량의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경찰관서 차량 전용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여 합법적인 주차면수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 안 13조의2 제목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를 “경찰관서 등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마 선 식